

청소년 사이버폭력 묻고 답하기

1.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답 : 상대방 ID가 확인되면 게시일시 · 공간 ·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ID 미확인 시 게시일시 · 인터넷주소 전체 ·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후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저에 대해 하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 누구든지 해당사이트 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친구랑 싸운 후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친구에 대한 혐담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이버 폭력 인가요?

답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하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며칠 전 같은 반 친구가 메신저 대화창에서 '병신새끼, 끄불면 죽는다' 등의 욕설을 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 1:1로 이루어지는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인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제74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룹채팅방에 짓궂은 이성친구가 여성의 나체 등 악한 사진을 올려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방에서 나와도 계속 초대를 해서 보게 만들어요.

답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성폭력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6. 최근 한 달간 누가 저에게 욕설이 담긴쪽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하고 무서워요.

답 : 일반적으로 쪽지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모욕죄 적용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욕설쪽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 * **위센터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or.kr
- *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 국번없이 117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 국번없이 1388

민원 및 상담기관

-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www.jikim.net/sos/ 1588-9128
- * **청소년전화** 1388.kyci.or.kr / 국번없이 1388
-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www.mogef.go.kr / 국번없이 1366
-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ww.iapc.or.kr / 1599-0075
- *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알아두면 좋아요 신고할 때의 방법

가까운 경찰서 방문신고

- *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 <http://cyber112.police.go.kr>에서 민원/민원서식/수사를 차례로 클릭)
-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하여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접수 당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피해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 가지고 가시면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 * 사이버폭력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 접수 후 대부분의 수사과정에서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출석,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없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이해와 대처 요령



청소년 사이버폭력 알아보기

사이버폭력이 뭐예요?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 등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과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왜 문제인가요?

사이버상의 폭력은 “청소년기에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갈등”이라거나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폭력으로 자살 충동

A(중1, 가해학생)양은 B(중1, 피해학생)양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뱃살’, ‘찌질이’라고 놀리면서 댓글을](#)다는 등의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B양은 자신감을 상실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자주 죽고 싶다고 함.
(학교폭력 SOS지원단 상담사례 발췌)

카톡 왕따로 여고생 자살

서울 O고등학교 1학년인 강모(16)양은 6군 등 5개 학교 10여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으나 “맞아야 정신차릴 년”, “00년”, “01년” 등의 욕설을 들은 후 자신의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음
\(한겨레신문, 2012년 8월17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 ① **(상대방의 입장 먼저 생각하라)** 사이버공간에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 ② **(상대방을 존중하라)**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③ **(사과하라)** 사이버공간에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한다.
- ④ **(신중하라)** 사이버공간에서 한번 맵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늘 신중하게 활동한다.
- ⑤ **(필요시 예만 공개하라)** 사이버공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공개한다.
- ⑥ **(정직하라)**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나이, 성별, 신분 등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
- ⑦ **(상대방을 보호하라)**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지켜준다.
- ⑧ **(음란물을 배포하지 말라)**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⑨ **(욕설 등을 사용하지 말라)** 사이버공간에서 장난이라도 욕설이나 비속어 또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⑩ **(거짓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 사이버공간에서 거짓된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올리거나 펴내르지 않는다.
- ⑪ **(외모나 신체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 사이버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외모나 신체에 관한 농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치요령

- ① **(분명한 거부 의사표현하기)**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한다.
- ② **(보복하지 않기)** 상대방의 사이버폭력에 바로 보복하려 시도하지 말고 그 공간을 벗어난다.
- ③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사소한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한다.
- ④ **(증거자료 확보하기)** 사이버폭력을 입증할 글, 그림, 음성, 동영상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다.
- ⑤ **(주변 어른들께 알리기)**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 ⑥ **(관련기관 도움 요청하기)**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는다.
- ⑦ **(신고 및 삭제 요청하기)**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 ⑧ **(경찰 신고하기)**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이버폭력인 경우 부모님 등과 상의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허위사실 유포나 타인을 동성애자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 집단 따돌림을 위해 왕따 카페를 개설하여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병신, 애꾸눈, 도둑놈’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인터넷상에 표현하는 것은 사이버모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람은 촬영행위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유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동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교복 명찰이 부착된 상태로 성기나 얼굴 등을 보여주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로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제2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여고생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수차례의 악성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이버스토킹 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스토킹 과정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①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금지 ③ 교내봉사 ④ 사회봉사 ⑤ 특별교육, 심리치료 ⑥ 출석금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